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이하 “스위스”라 한다)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이하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이 이 협정의 서명일에 서명되었음을 상기하며,

이 협정이 자유무역협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문서의 일부를 구성함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적용범위

1. 이 협정은 다음 상품의 무역에 적용된다.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 체계(이하 “HS”라 한다) 제1류 내지 제24류로 분류되는 것으로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V 및 V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상품. 그리고

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II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상품

2. 이 협정은 「1923년 3월 29일의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공국 간의 관세동맹조약」이 효력을 유지하는 동안, 리히텐슈타인공국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 2 조 관세양허

1. 대한민국은 스위스를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이 협정의 부속서 I에 규정된 대로 관세양허를 부여한다. 스위스는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이 협정의 부속서 II에 규정된 대로 관세양허를 부여한다.

2. 특혜 관세율이 이 부속서에 “B4”로 기재된 상품에 대하여, 관세율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첫 번째 단계가 시행되면서 동등한 11단계로 점진적으로 철폐되고, 후속 단계는 2007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매년도 1월 1일에 시행되며 2016년 1월 1일부터 완전 철폐된다.

제 3 조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1.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의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에 적용된다. 그 부속서에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 언급된 것은 스위스를 언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의 제3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의 제2조에 불구하고, 이 협정의 의미 내에서 타방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는 당해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로 간주되며 그러한 재료가 그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충분한 공정 또는 가공을 거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러나, 공정 또는 가공은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의 제6조에 규정된 것 이상이어야 한다.

제 4 조 대 화

양 당사국은 그들의 농산물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조사하며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5 조 추가적 자유화

양 당사국은, 당사국간 농산물 무역의 패턴, 그러한 상품의 특수한 민감성 및 양측 농업정책의 발전을 고려하여, 그들의 농산물 무역의 추가적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한다. 일방 당사국이 특정 상품의 추가적 자유화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타방 당사국은 추가적 자유화를 협의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

제 6 조 자유무역협정 규정

자유무역협정상의 다음 규정들은 양 당사국 간에 이 협정에 준용된다.

제1.2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제2.9조 · 제2.11조 · 제2.12조 · 제2.13조 · 제10.1조 및 제9장

제 7 조 농업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농업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

제 8 조 수출보조

일방 당사국이 제2조에 따라 관세양허의 대상이 되고 타방 당사국과 무역되는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보조를 도입하거나 재도입하는 경우, 타방 당사국은 그 시점에 발효되고 있는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까지 그러한 수입에 대하여 세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제 9 조 부속서 및 부록

이 협정의 부속서 및 부록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 10 조

개정

1.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합의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개정은 나중에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의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된다.

제 11 조

발효

1. 이 협정은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양 당사국 간에 교환되어야 한다.
2. 이 협정은 대한민국과 스위스 간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에 발효된다.

제 12 조

이 협정과 자유무역협정 간의 관계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양 당사국이 자유무역협정의 당사국으로 남아있는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이상의 증거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서명자들은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12월 15일, 홍콩에서 영어본으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스위스연방을 대표하여

부속서 I의 부록

스위스 치즈

특혜 대우는 치즈가 첨부된 증명서 서식에 따라 적합한 정의에 정확하게 부합함을 증명하는 진품 증명서 제출을 필요로 한다.

가) 정의

이름 :	에멘탈* 또는 에멘탈러*(Emmental or Emmentaler)
모양 및 외관 :	프로피온산 발효를 통해 가공한 생우유로 만든 하드치즈임. 치즈덩어리는 단단한 황갈색 외피를 가짐. 습한 환경에서 저장된 치즈는 갈색에서 검은색에 이르는 색깔을 띨 수 있음.
높이 :	16 ~ 27 cm
지름 :	80 ~ 100 cm
무게 :	75 ~ 120 kg
질감 :	탄력적이고 접착력이 없는 덩어리로 작은 것부터 중간 사이즈에 이르는 구멍을 가짐.
색상 :	아이보리에서 황색에 이른다.
맛 :	약간의 신맛, 단맛, 짠맛, 향긋함.
특징 :	건조품의 지방함량 45 ~ 55 % 수분 함량 최대 38 %

이름 :	스브린츠*(Sbrinz)
모양 및 외관 :	생우유로 만든 하드치즈임. 치즈 덩어리는 둥글고 짙은 연노란색에서 금색을 가짐. 최소 16개월동안 숙성시킴.
높이 :	12 ~ 15 cm
지름 :	45 ~ 65 cm

* “스위스산” 문구가 덧붙을 수도 있다.

무게 :	25 ~ 45 kg				
질감 :	약간 탄력적인 덩어리로 조금 부서지기 쉬우며 접착력이 있음. 약간 건조하며 상당히 까칠까칠함.				
색상 :	아이보리에서 연노란색에 이른.				
맛 :	과일맛, 향긋함, 약간 구운맛, 짠맛, 약간 단맛, 과일향이 나는 구운 치커리로 맛이 강조되며 파인애플 맛을 연상시킴.				
특징 :	<table border="0"> <tr> <td>건조품의 지방함량</td><td>약 45 %</td></tr> <tr> <td>수분 함량</td><td>약 35 %</td></tr> </table>	건조품의 지방함량	약 45 %	수분 함량	약 35 %
건조품의 지방함량	약 45 %				
수분 함량	약 35 %				
이름 :	그뤼에르* 또는 그뤼에르 달파쥐*(Gruyre or Gruyre d'alpage)				
모양 및 외관 :	생우유로 만든 하드치즈임. 치즈덩어리는 흠이 없고 균일한 갈색을 띤 외피를 가짐. 모양은 균형이 잘 잡힘.				
높이 :	9 ~ 12 cm				
지름 :	50 ~ 65 cm				
무게 :	20 ~ 40 kg				
질감 :	표면은 부드럽고 조금 습하며 잘 부서짐.				
색상 :	아이보리에서 연노란색에 이른.				
맛 :	다소 짠맛이 남. 산 발효 과정과 저장실 숙성이 결합되어 약간의 과일 맛이 남.				
특징 :	<table border="0"> <tr> <td>건조품의 지방함량</td><td>49 ~ 53 %</td></tr> <tr> <td>수분 함량</td><td>34 ~ 38 %</td></tr> </table>	건조품의 지방함량	49 ~ 53 %	수분 함량	34 ~ 38 %
건조품의 지방함량	49 ~ 53 %				
수분 함량	34 ~ 38 %				
이름 :	전지 아펜젤러* 및 25% 아펜젤러*(Appenzeller full fat and Appenzeller $\frac{1}{4}$ fat)				
모양 및 외관 :	생우유로 만든 하드치즈임. 치즈덩어리는 저장소에서 숙성과정을 통한 황갈색 외피를 가짐.				
높이 :	6 ~ 9 cm				
지름 :	30 ~ 33 cm				

* “스위스산” 문구가 덧붙을 수도 있다.

b) 진품 증명서

첨부된 서식에 따른 진품 증명서는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위임한 기관에서 발행된다. 사후 확인요청서는 스위스연방농업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진품 증명서

1. 수출자(성명 및 주소)		아래 명시된 치즈 증명서 (HS 품목분류체계에 의한 코드번호)	
		일련번호	진품
2. 수하인(성명 및 주소)		3. 위임기관	
주석		4. 송장 번호 및 발행일자	
5. 화인과 수량-번호와 포장종류		6. 총 중량(kg)	
		7. 순 중량(kg)	
8. 위임기관 사증 위에 언급된 송장은 대한민국과 스위스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I의 부록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명시된 스위스 치즈를 포함함을 증명한다.			
발행장소 및 발행일자 :		서명:	위임기관 직인(인장):
9. 대한민국 세관당국용			